

장난감 오인 막기 위해 동물모양 전기용품엔 안전인증 아예 안내줘  
인터넷 유통 가습기 토스터 등 20여종 모두 안전인증 안받은 '불법'

## 동물모양 전기제품, 판매-수입 금지 요청 일부 수입업자 멋대로 '안전인증 표시' 붙여...소비자들 주의 요망

문의 | 산업자원부 전기용품안전팀 (02-509-7242)

최근 시중에 동물 모양의 전기용품이 유통되고 있어 이를 장난감으로 오인한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유통업체 및 세관 등에 이러한 전기용품의 판매 및 수입 금지를 요청하는 한편, 관련 협회를 통해 단속에 들어갔다.

지난 2006년 12월부터 “전기용품의 외관은 아이들에게 장난감으로 취급될 수 있는 형상 및 장식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 국제기준을 적용, 동물 모양의 전기용품에 대해 안전인증을 해주지 않고 있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울들어 인터넷과 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가습기나 계란찜기, 토스터기 등 20여 종의 동물 모양 전기용품이 1만~3만원에 판매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 제품들 중에는 2006년 이전에 안전인증을 받은 것도 극히 일부 있었으나, 나머지는 대부분 수입업자나 판매업자들이 안전인증을 받은 것 처럼 불법적으로 표시한 제품이었다.

전기용품을 잘못 사용할 경우 화재 및 감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시중에서 판매되는 모든 전기용품은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동물 모양의 전기용품은 그 자체로는 위험하지 않으나, 어린이들이 장난감으로 오인해 가지고 놀다가 화상이나 감전 사고를 당할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기술표준원은 동물 모양의 전기용품을 판매하는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관세청과 세관에는 수입금지를 요청하는 한편,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를 통해 수시로 불법제품 판매업체를 조사해 고발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이들 제품의 유통을 빠른 시일 내에 근절시킬 계획이다.

한편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안전인증을 표시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압력밥솥 · 물놀이기구 등 60개품목 대상... 年内 4차례 안전성조사

# 안전불량 생활용품 “끝까지 추적 단속”

제품별 성수기 전에 조사결과 발표해 유통 원천봉쇄 방침

문의 | 산업자원부 전기전자표준팀 (02-509-7250)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불량제품의 근절을 위한 강력 단속에 나섰다.

기표원은 「'08년 시중 유통제품 안전성조사 계획」을 확정하고, 올해 중 공산품 25개 품목, 전기용품 35개 품목 등 총 60개 품목을 대상으로 4회에 걸쳐 불량품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60개 품목은 압력밥솥 물놀이기구 합성세제 비비탄총 등으로, 일상생활용품이나 유아용품이 대부분이다.

조사 대상은 ▲ 매년 실시하는 정기검사에서 불합격 빈도가 높은 품목 ▲ 소비자고발 또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품목 ▲ 소비자단체, 제품별 협회, 안전인증기관 등에서 조사 대상으로 추천한 품목 등이다.

기술표준원은 불량제품 단속을 위해 대형매장, 전문상가, 재래시장,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제품을 직접 구입해 안전인증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 제품별로 성수기가 있는 점을 감안, 성수기 이전에 안전성조사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불량제품의 시중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불량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해 유통시키는 업체에 대해서는 불합격 정도에 따라 개선명령, 안전인증마크 표시정지, 안전인증 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기술표준원은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제품에 안전인증마크(KPS:공산품, eK:전기용품)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이 안전인증을 받았는지의 여부는 제품안전포털사이트([www.safetykorea.kr](http://www.safety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안전성 높이기 위해 유럽연합기준 채택 가스보일러 ‘더 안전해진다’

문의 | 산업자원부 에너지안전팀 (02-2110-5446)

■ 산업자원부는 가스보일러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유럽연합기준(EN)을 기술기준으로 채택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중 일부개정령」을 '08. 2. 18일(월) 고시하였음.

■ 현행 가스보일러 제조 및 검사기준('94년 전문개정)은 EN기준에 비해 기술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일산화탄소(CO)농도 증가에 따른 안전기준이 미흡하여 질식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기술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됨

\* 최근 5년간 가스보일러에 의해 발생한 40여건의 사고중 일산화탄소 질식에 의한 인명피해는 사망 10명, 중독 15명에 달함

■ EN기준을 채택할 경우 모든 가스보일러에는 일산화탄소 농도가 2,000ppm 초과시 보일러의 작동이 자동으로 정지되도록 하는 공기감시장치 설치가 의무화되어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발생 가능성이 근원적으로 차단되게 되며,

◎ 이 밖에도 자동버너컨트롤시스템(PCB)의 안전성을 평가하도록 함으로서 임의적 결함으로 인한 보일러 오작동을 줄이는 동시에, 부품의 내구성 시험횟수 증대(15,000회 → 250,000회), 전기적 안전성(LVD) 평가 및 전자파 적합성(EMC) 평가 실시, 환경관련 NOx 농도 측정 등 가스보일러의 기술기준이 대폭 강화되게 됨

◎ 다만, 가스보일러 제조업체의 기술수준에 따라 EN 기준 부합화에 걸리는 시간이 상이한 점을 감안, 설계단계 검사는 3년간, 생산단계 검사는 5년간 현행 기준도 함께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음

■ 동 개정으로 강화된 가스보일러 제조 및 검사기준이 시행되면 국민생활의 안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뿐만 아니라 가스보일러의 효율 향상 및 제조업체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계기가 될 것임

- 이밖에도 개정된 통합고시에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07. 9. 14 공포)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 ◎ 대형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당해 업무가 원활하고 투명하게 시행되도록 하는 동시에,
  - \* 액법 시행규칙에서는 저장능력 1,000 이상 충전소·저장소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 평가 방법 등을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
- ◎ 가스용품으로 추가된 연료전지의 제조 시설, 검사기준 및 기술 기준을 정함으로써 연료전지의 안전 확보 및 제조·검사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